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5
----------	-------

제출년월일 : 2024. 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여성우선주차장 이용 대상 확대, 국가 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보훈 예우 문화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우선주차장 명칭 변경 및 이용 대상 확대(안 제21조의4)

나. 국가 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조문 신설 (안 제21조의5)

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조문 정비 (안 제4조의5)

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내용 반영 및 조문 정비
(안 제4조의4)

마.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중 토지가액 산정 시 인용 법 조항 정비
(안 제21조의3)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4. 4. 18. ~ 5. 8.(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2024.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으로,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한다.

제4조의5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⑤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크기·높이·기울기·재질
2. 바닥면·주차구획선의 장애인 전용표시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를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로 한다.

제21조의4의 제목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모”를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제21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여성우선주차장”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를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별표 6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제3조(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본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주차 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 시 월 정기권 요금

-노상주차장: 월 4만원

-노외주차장: 월 5만원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홍익대학교·서강대학교 주변 지역 : 신촌로·대흥로·강변북로·양화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개정 2020.2.27.>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탑승하여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신설 2020.2.27.>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신설 2021.12.30.>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

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 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급지부터 5급지까지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14. <삭제, 2020. 7. 9.>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주차 당일의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주차 당일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 당일에 한정하여 총 주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개정 2018.12.27., 2023. 3. 9.>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

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3.7.13.>

17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21.12.30.>

1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19.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0.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단, 학교 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수강 시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시간 이내 면제 <개정 2022.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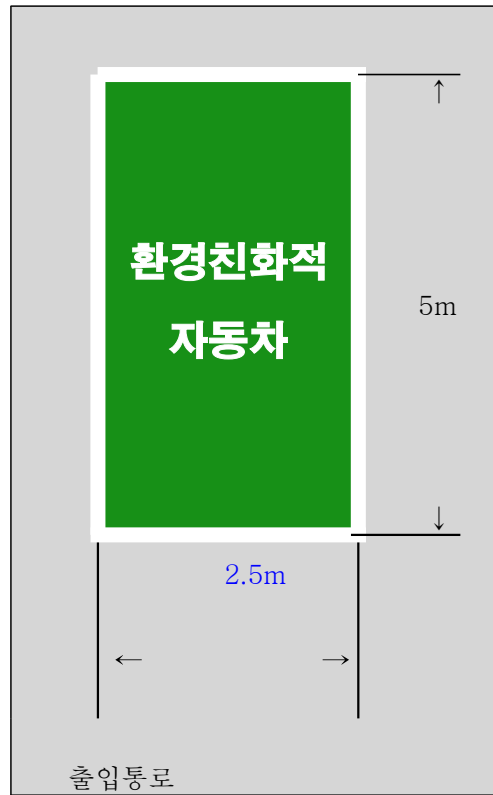
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정기권 50% 할인(단, 중복할인 불가)

21. 공무수행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2. 서울특별시장의 지정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신설 2019.3.28.>
25.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3시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4.24.>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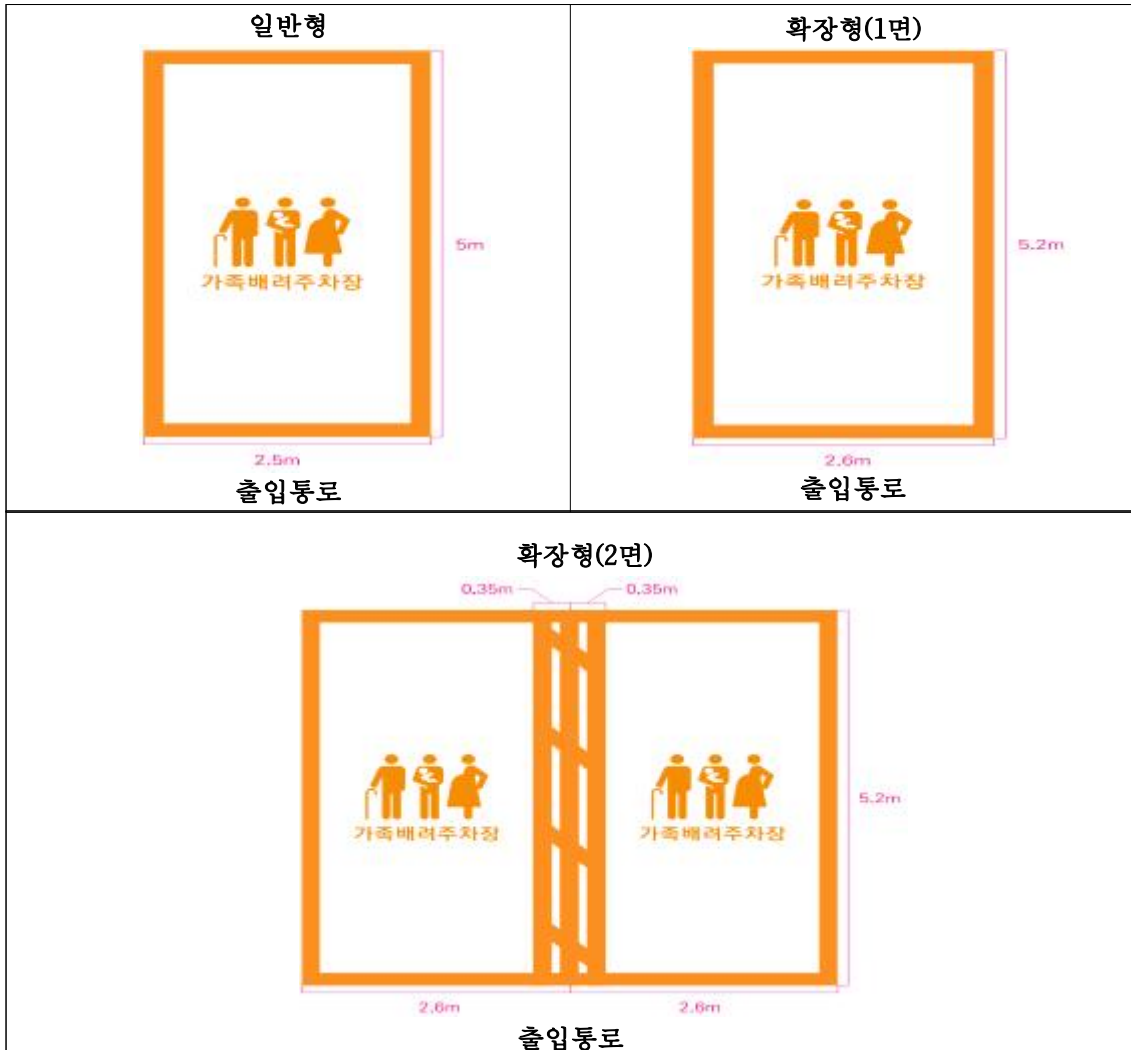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제4조의4 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세로 5m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2.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제21조의4 제5항 관련)



- 비 고 -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별표 6] <신 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제21조의5 제4항 관련)
바닥면**



안내표지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4(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u>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u></p> <p>② <u>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u></p> <p>③ <u>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표 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u></p> <p>제4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4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u>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u> -----</p> <p>-----</p> <p>-----</p> <p>-----</p> <p>----- <u>5퍼센트</u> -----</p> <p>-----.</p> <p><u><삭 제></u></p> <p>③ <u>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u>-----</p> <p>-----.</p> <p>제4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u></p> <p><u>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u></p>

<신 설>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⑤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크기·높이·기울기·재질
2. 바닥면·주차구획선의 장애인 전용표시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로 감액한다.

1.·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

-----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

4.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제21조의4(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4.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
-----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
-----.

④ 가족배려주차장-----

-----.

1. (현행과 같음)
2. -----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삭 제>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신 설>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제21조의5(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별표 6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

제21조의5 (생략)

<신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관련)

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6 (현행 제21조의5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제3조(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본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관련)

(생략)

비고 -

1.~6.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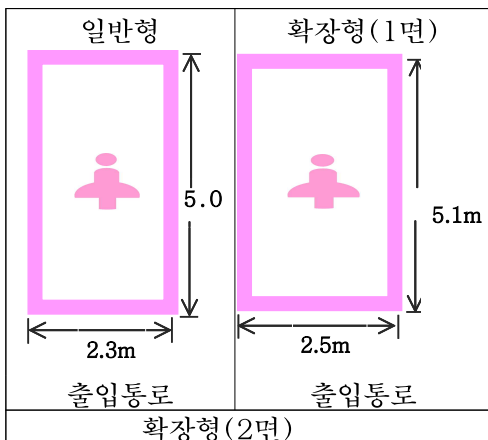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마. (생략)

<신설>

8.~26. (생략)

[별표3]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제21조의4 제4항 관련)



(현행과 같음)

비고 -

1.~6.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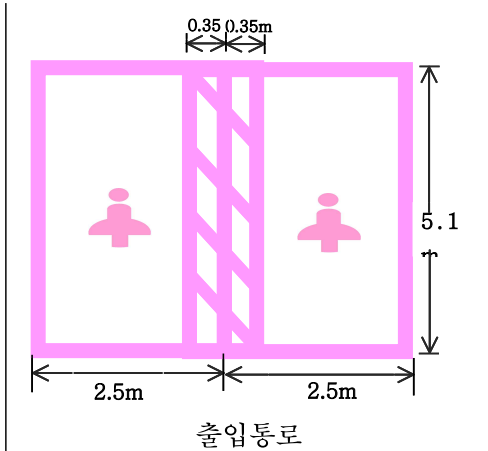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마.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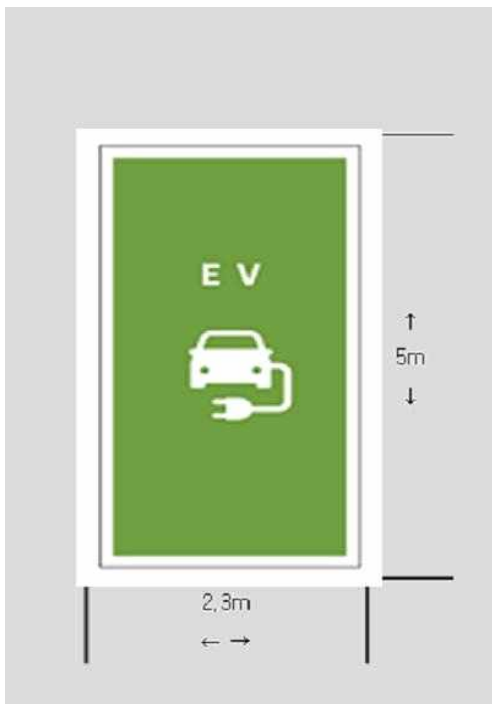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8.~26. (현행과 같음)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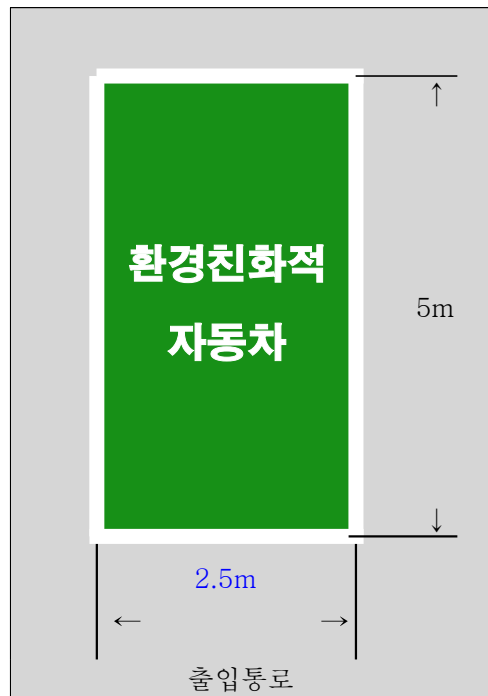
[별표4] 전기자동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4조의4 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 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별표4]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장 주차구획(제4조의4 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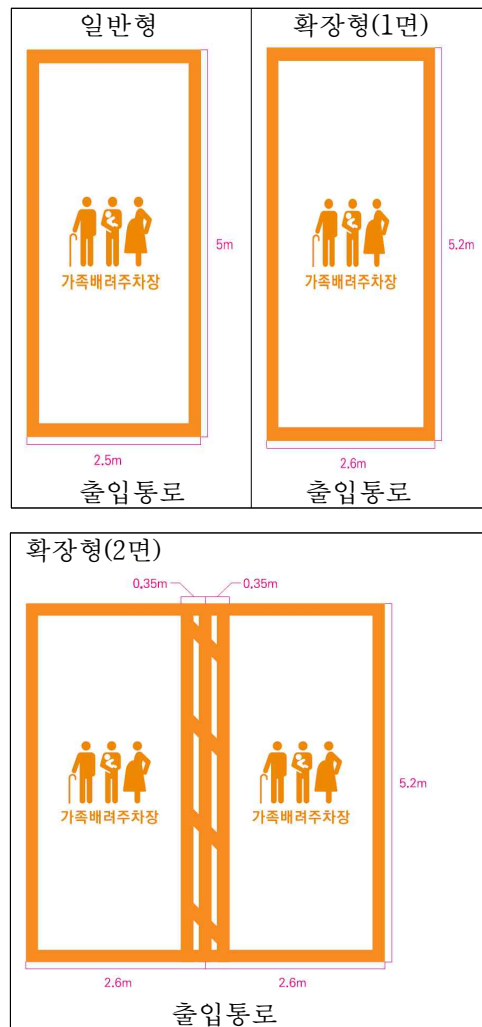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 m이상×세로 5m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2.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신 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별표5]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제21조의4 제5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 이상 × 세로 5m 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 이상 × 세로 5.2m 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

<신 설>

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 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 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별표6]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주차구획(제21조의5 제4항 관련)

바닥면



안내표지판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제21조의4(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 나. 제21조의5(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주차면 1면당 도색비용: 약350,000원
 - 도색이 필요한 주차면수: 233면 (가족배려 197면, 국가유공자 36면)
 - 예상비용: 약81,550,000원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안정현 (☎ 02-3153-9664)